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3007 제출연월일: 2024. 8. 20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

국민 중심의 행정 법체계를 마련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체납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 기간의 상한을 설정하는 한편,

행정청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 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주요내용

가. 법령의 범위 명확화[안 제2조제1호가목3)]

종전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훈령·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만 이 법이 적용되는 "법령"에 규정되어 있었으나, 법률·대통령령·총리령·부령 및 국회규칙·대법원규칙 등의 위임을 받아 다른헌법기관 등이 정한 훈령·예규 및 고시 등 행정규칙도 이 법이 적용되는 "법령"에 포함되도록 규정함.

나. 체납된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에 대한 일반규정 마련(안 제28조제3 항 신설)

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의 일반규정이 없어 가산금을 규정한 개별 법률마다 가산금의 차이가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앞으로 는 개별 법률에서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두는 경우 그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.

다.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 보완(안 제36조제4항, 안 제36조제5항 신설) 이의신청 결과 통지를 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대상이 원처분임을 명확히 하고, 행정청은 이의신청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도록 함.

법률 제 호

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가목3) 중 "중앙행정기관(「정부조직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"을 "중앙행정기관(「정부조직법」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장, 국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재판소장,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, 감사원장 등"으로 한다.

제7조제1호 중 "공포한 날부터"를 "공포한 날(훈령·예규·고시·지침 등은 고시·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"로 한다.

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.

제36조제4항 중 "90일 이내에"를 "90일 이내에 제1항의 처분(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처분으로 한다)에 대하여"로 하 고,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 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"제5항"을 "제6항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제5호 중 "출입국·난민인정"을 "출입국"으로 한다.

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, 제2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 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"법령등"이란 다음 각 목의	1
것을 말한다.	<u>.</u>
가. 법령: 다음의 어느 하나	가
에 해당하는 것	
1) • 2) (생 략)	1) • 2) (현행과 같음)
3) 1) 또는 2)의 위임을 받	3)
아 중앙행정기관(「정부	<u>중앙행정기관(「정</u>
조직법」 및 그 밖의 법	부조직법」 및 그 밖의
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	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
행정기관을 말한다. 이하	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
<u>같다)의 장</u> 이 정한 훈령	<u>다. 이하 같다)의 장, 국</u>
·예규 및 고시 등 행정	회의장, 대법원장, 헌법
규칙	재판소장, 중앙선거관리
	위원회위원장, 감사원장
	<u> </u>
나. (생 략)	나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생 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제7조(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	제7조(법령등 시행일의 기간 계
산) 법령등(훈령·예규·고시	산)
•지침 등을 포함한다. 이하	
이 조에서 같다)의 시행일을	
정하거나 계산할 때에는 다음	

-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.
- 법령등을 <u>공포한 날부터</u> 시 행하는 경우에는 공포한 날 을 시행일로 한다.

2. · 3. (생략)

제28조(과징금의 기준) ①·② (생 략)

<신 설>

제36조(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 ① ~ ③ (생 략)

④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받은 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그 결과를 통지받은 날(제2항에 따른 통지기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지 못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

-----.

- 1. ----- <u>공포한 날(훈령・예</u> 규·고시·지침 등은 고시· <u>공고 등의 방법으로 발령한</u> 날을 말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부터 -----.
 - 2. · 3. (현행과 같음)
- 제28조(과징금의 기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 - ③ 제2항제4호에 따라 체납된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을 부과 하는 규정을 정할 때에는 가산 금의 부과율 및 부과기간이 금 융기관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 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 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과율 및 부과기간을 넘지 아 니하도록 규정하여야 한다.

제36조(처분에 대한 이의신청)

-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- (4) -----

따른 통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)부터 <u>90</u>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<신 설>

- ⑤ (생략)
-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-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

------ <u>90일 이내에</u> 제1항의 처분(이의신청 결과 처분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 된 처분으로 한다)에 대하여 -

- ⑤ 행정청은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 항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 등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 하여야 한다. 다만,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하기 전에 이 미 신청인이 행정심판 또는 행 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안 내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<u>⑥</u> (현행 제5항과 같음)
- _____
- -----.
- <u>®</u> -----

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- 1. ~ 4. (생 략)
- 5. 외국인의 <u>출입국·난민인정</u> 5. ----- <u>출입국</u>-----·귀화·국적회복에 관한 사
- 6. (생략)

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_	
																		٠

- 1. ~ 4. (현행과 같음)
- 6. (현행과 같음)